의안번호 제 636 호

검 토 보 고 서

(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)

□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.

□ 의안번호 제636호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경비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경비로써 지출 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□ 본 건의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

○ 결산검사 의견서 P10 보시면
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보전비용 추가납부 2,577,780원
정보화교육 32,941,150원 2건 35,518,93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.

□ 검토의견으로서는

○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산인데도

○ 정보화교육 32,941,150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, 예비비의 지출 성격상 다소 적절하지 않은 집행이라 판단되며,

○ 향후 예비비 집행은 이런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방자치법 및 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.

□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